

Korean Tax Update

April 2017, Issue 34

[조세뉴스]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문보기]

'17. 3. 28. (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고용 및 저소득층 세제지원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하였음. 최근 고용 부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고하기 위하여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청년고용증대세제 등 고용 관련 세제지원을 강화하였으며, 저소득 가구의 소득 및 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세제 대상을 확대하였음. 다만, 당초 정부안에 포함되었던 혼인세액공제 신설은 저출산 대책 전반과 연계하여 정기국회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하였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법사위 및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임.

가.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사후관리 보완(안 제 26 조의 5)

-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1 인당 공제금액을 300 만원(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0 만원,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700 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법이 개정됨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 받은 후 공제받은 과세연도종료일로부터 2 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등이 감소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는 금액 계산시에도 확대된 1 인당 공제금액이 적용 되도록 함.

나.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 시 중견기업 범위 규정(안 제 27 조의 2)

-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기업의 범위에 중견기업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중견기업의 범위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10 조 제 1 항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규정함.

다. 개별소비세 감면세액 추징 예외사유 명확화(안 제 117 조)

- 신차구입 후 신규 등록하여 개별소비세를 감면 받았으나, 변심하여 노후 경유차를 말소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에게는 귀책이 없는 추징 사유에 해당하는 바, 귀책자인 신차구입자에게 추징하여야 함을 명확히 함.

'17. 5 월부터'외국인 비자연장 전(前) 세금 체납 확인제도'확대 실시 [전문보기]

법무부와 행정자치부, 국세청, 관세청은 국내 체류 외국인 급증에 따라 증가하는 지방세, 국세, 관세 등의 외국인 체납액(17. 4 월 현재 1,800 억원 상당)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해 그간 시범 운영해오던 "외국인 비자연장 전(前) 세금체납 확인제도"를 2017 년 5 월부터 16 개소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확대 시행하기로 함. 이번 조치는 지난해 5 월부터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에서 지방세에 한해 시범운영 되어온 "외국인 비자연장 전(前) 세금체납 확인제도"를 올해 5 월부터 전국 16 개소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지방세뿐 아니라 국세, 관세로 확대 시행하는 것임.

대한민국 정부와 케냐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 (조약 제 2347 호, 2017. 4. 12) [전문보기]

2014 년 4 월 22 일 제 18 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4 년 7 월 8 일 나이로비에서 이경수 외교부 차관보와 Henry Rotich 케냐 재무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2016 년 9 월 7 일 제 346 회 국회(정기회) 제 4 차 본회의의 비준동의를 얻은 후,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적 법적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7 년 4 월 3 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케냐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을 이에 공포함.

[예규·판례]

[판례 1] 공정거래법에 따라 설립 내지는 전환된 지주회사가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 회사의 주식을 일시에 취득함으로써 그 국내 회사를 자회사로 새로 편입하여 그 국내 회사의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도 간주취득세가 면제됨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 두 59713 판결

- 지주회사를 간주취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 10406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20 조 제 6 항 제 8 호의 입법취지는 지주회사의 설립이나 지주회사로의 전환에 대하여 세제혜택을 줌으로써 소유와 경영의 합리화를 위한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려는 데에 있는 것임. 감면조항의 문언과 아울러 지주회사에 대한 세제혜택의 취지 및 공정거래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지주회사의 자회사 편입 유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정거래법에 따라 설립 내지는 전환된 지주회사가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 회사의 주식을 일시에 취득함으로써 그 국내 회사를 자회사로 새로 편입하여 그 국내 회사의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도 간주취득세가 면제됨.

[판례 2]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 시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의 산정시 당해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산정함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 두 64043 판결

- 감면대상사업이 그렇지 아니한 다른 사업과 함께 해당 법인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하나의 소득을 창출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전체 소득 중 감면대상사업으로 인한 부분을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인데,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 10406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등에서는 법인이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면서 생산한 제품을 다른 비감면대상사업의 제조에 사용하는 경우에 각 사업별 소득의 구분 및 산정에 관한 구체적 방법에 대하여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만큼, 이러한 경우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그 전체 매출액을 기초로 한 원가비례법 등 당해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이를 산정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함.

[판례 3] 수입자가 수출자의 국내 자회사로서 물품 수입 및 공급거래의 과정에서 모회사의 지시에 따르거나 수입물품에 관한 경제적 위험을 모회사와 분담하는 등 일반적인 제 3 자 사이의 거래와 다른 특수한 점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자회사를 판매대리인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님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5 두 49320 판결

-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수입자가 수출자의 국내 판매대리인으로서 단순 보조자에 불과하다면 국내 구매자가 수입자에게 지급한 가격이 그 기준이 될 수 있지만, 수입자가 국내 구매자에 대한 독립적인 판매자의 지위에 있다면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지급한 수입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하고, 양자의 구별은 물품 수입계약 및 국내 구매자에 대한 판매계약의 각 계약당사자, 수입가격 및 국내 판매가격의 결정 방식, 국내 구매자에 대한 물품공급 과정, 수입물품에 관한 위험부담의 법적 귀속 주체, 관세회피 목적의 유무 등 거래의 형식과 실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래관념과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그러므로 수입자가 수출자의 국내 자회사로서 물품 수입 및 공급거래의 과정에서 모회사의 지시에 따르거나 수입물품에 관한 경제적 위험을 모회사와 분담하는 등 일반적인 제3자 사이의 거래와 다른 특수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거래통념상 모회사와 자회사 사이에서 보통 이루어지는 거래방식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관련 당사자들 사이의 계약 내용을 무시하고 그 자회사를 수입물품의 구매자가 아닌 판매대리인에 불과하다고 쉽게 단정할 것은 아님.

[판례 4] 결손법인에 재산 무상제공 시, 주주의 실제 이익 없는 경우 증여세 부과는 위법임

대법원 2017. 4. 20. 선고 2015 두 45700 판결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41 조 제 1 항(2010. 1. 1. 법률 제 9916 호)은 그 문언의 일부 개정에도 불구하고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이익을 얻었음을 전제로 그 이익의 계산방법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규정이라고 볼 것이어서, 특정법인의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 재산을 증여하는 거래를 하였다라도 그 거래를 전후하여 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 등의 가액이 증가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정 법률 조항에 근거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

[판례 5] 상속증여세법 제 41 조의 3 제 6 항에서 정한 '신주'에는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에 기초하지 아니하고 또한 증여받은 재산과도 관계없이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신주가 포함되지 아니함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 두 55926 판결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41 조의 3(2011. 12. 31. 법률 제 11130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 항과 제 41 조의 5 제 1 항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주식을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경우를 그 적용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 41 조의 5 제 3 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제 41 조의 3 제 6 항은 제 41 조의 3 제 1 항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여 법인이 발행한 신주를 그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음. 이러한 위 규정들의 내용과 취지와 아울러 그 문언과 체계에 비추어 보면, 상속증여세법 제 41 조의 3 제 6 항에서 정한 '신주'에는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에 기초하지 아니하고 또한 증여받은 재산과도 관계없이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신주가 포함되지 아니하며, 이러한 신주에 의하여 합병에 따른 상장이익을 얻었다 하더라도 위 조항이 준용되는 제 41 조의 5 제 1 항에서 정한 증여재산가액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없음.

[심판례 1] 형사소송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조심 2017 부 0486, 2017. 3. 30.

- 형사사건의 판결은 조세포탈죄에 관한 판결이라 하더라도 범죄 성립의 판단 및 처벌을 전제로 하여 범칙소득을 확정하는 것이므로 과세소득 확정과는 그 목적을 달리하고 각각의 확정을 위한 절차도 별도로 정해져 있는 점, 형사사건의 확정판결만으로는 사법상의 거래 행위가 무효로 되거나 취소되지는 않으므로 이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심판례 2] 소득세법 제 94 조의 대주주 판정시 우선주를 포함하여야 함

조심 2017 서 0592, 2017. 3. 22.

- 양도소득세 조항의 입법취지는 대량의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 일가의 주식 명의 분산 및 그 분산된 주식의 양도를 통한 변칙증여를 방지하고 부동산 등 다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와 과세형평을 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포함하였는데, 다만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로 인해 장래 예상되는 자본시장에 대한 부정적 영향과 투자 위축을 줄이기 위해 정책적으로 과세범위를 조정하는 등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여,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대주주의 양도소득 등으로 과세대상을 제한하되, 구체적인 과세대상에 관하여는 시행령에 위임하게 된 것임. 위 법령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볼 때 대주주 판정시 우선주를 제외하여야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대주주의 범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위임하였으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아닌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대주주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하고, 소득세법상 우선주를 배제하라는 명문규정이 없음.

[심판례 3] 자회사 등 경영관리 업무는 자회사 등의 필요나 선택에 따른 것이 아닌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금융지주회사가 수행하여야 할 필수적인 업무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당 업무를 용역제공 거래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은 잘못임

조심 2016 서 3721, 2017. 3. 16.

- 금융지주회사법 제 15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1 조 제 1 항에 열거된 경영관리에 관한 업무에 해당되는 업무는 자회사 등의 필요나 선택에 따른 것이라기 보다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융지주회사가 수행하여야 할 필수적인 업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구체적인 쟁점업무 수행 내역상 자회사 등 사업계획 가이드라인 제시, 자회사별 사업목표 부여 및 사업계획 승인, 경영성과 평가 등의 업무가 포함되어 있는바, 쟁점업무는 경영자문용역이라기 보다는 자회사 등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한 주주활동의 일환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쟁점업무 수행이 자회사 등의 수익에 직접적인 기여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자회사 등 입장에서 쟁점용역대가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손금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쟁점업무 수행을 용역제공 거래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심판례 4] 교환취득한 쟁점안벽은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대상 자산인 구축물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구축물(시설물)에도 해당함

조심 2016 부 1563, 2017. 3. 31.

- 부두의 안벽부분(이하 '쟁점안벽')이 지적공부상으로는 토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실질은 콘크리트 구조물로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침식·파손이 진행되어 그 가치가 감소하게 되는 시설물임이 명백한 점, 「항만법」이나 "구 기업회계기준" 등 관련 유사 규정에서 안벽을 토지

와 구분되는 구축물(시설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쟁점안벽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시설물 또는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대상 자산인 구축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심판례 5]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기 위한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이를 수탁법인에게 신탁한 것을 매각으로 보아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 2016 지 0027, 2017. 3. 29.

- 신탁계약에 의하여 형식상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위탁자인 청구법인의 책임하에 지식산업센터 건축사업이 추진되었으며, 지식산업센터 건축을 활성화하고자 취득세 등의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는 방편으로 자금조달과 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쟁점토지를 수탁법인에게 신탁하였으나, 신탁계약의 내용에 의하여 실질적인 사업시행자로서의 역할을 계속 수행하는 경우까지 일반적인 매각을 통하여 사업수행을 포기한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부합되지 아니한다고 보이는 측면에서 위탁자인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가 이를 수탁법인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58 조의 2 제 1 항 제 1 호 나목의 매각·증여에 해당되므로 추징대상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심판례 6]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은 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조심 2016 지 0423, 2017. 4. 3.

- 학교용지부담금은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부과·징수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쟁점공동주택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학교용지부담금은 쟁점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됨.

[예규 1] 적격합병법인의 합병 전 보유자산의 처분손실 중 이월된 처분손실이 내재손실이 아닌 경우 2017 년 1 월 1 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손금산입 가능함

사전법령법인-143, 2017. 3. 20.

-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합병 전 보유자산을 처분하여 처분손실이 발생(해당 자산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하였으나 「법인세법」 제 45 조 제 3 항(2016. 12. 20. 법률 제 14386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이월된 처분손실이 있는 경우, 2017 년 1 월 1 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는 「법인세법」 제 45 조 제 3 항(2016. 12. 20. 법률 제 14386 호로 개정된 것)에 따른 공제 제한 없이 해당 이월된 처분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예규 2] 중견기업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매출액 판단 시 연결재무제표 대상이 되는 종속법인의 매출액은 포함하지 않는 것임

서면법령재산-299, 2017. 4. 12.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 27848 호로 개정된 것) 제 9 조 제 4 항 제 1 호 및 제 3 호의 요건을 충족한 중견기업이 100% 지분을 보유하는 종속기업이 있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 14388 호로 개정된 것) 제 18 조 제 2 항 제 1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5 조 제 2 항 제 3 호에 따른 매출액 계산 시 종속기업의 매출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예규 3] 유상감자를 결의한 후 물적분할로 해당 법인의 주식을 분할신설법인에 양도함에 따라 동 분할신설법인이 유상감자 대가를 수취한 경우에는 상법상 감자기준일을 기준으로 의제배당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재법인-444, 2017. 4. 4.

- 특정 법인의 주주총회에서 유상감자를 결의한 후 해당 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법인이 물적분할로 해당 법인의 주식을 분할신설법인에 양도함에 따라 동 분할신설법인이 특정 법인의 유상감자 대가를 수취한 경우에는 「상법」 제 354 조 제 1 항의 기준일(감자기준일)을 기준으로 「법인세법」 제 16 조 제 1 항 제 1 호를 적용하는 것임

[예규 4] 균등유상증자로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 80 조 제 1 항 제 2 호 가목의 “합병포합주식 등”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법령법인-3776, 2017. 3. 18.

- 피합병법인의 기존주주(합병법인)가 균등유상증자로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 80 조 제 1 항 제 2 호 가목의 “합병포합주식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또한,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받는 합병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 80 조 제 1 항 제 2 호 가목의 합병교부주식등으로만 지급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 80 조의 2 제 3 항 제 2 호에 따른 합병등기일 전 2 년 이내에 취득한 합병포합주식에 대하여 교부한 합병교부주식등(같은 영 제 1 항 제 2 호 가목 단서에 따라 합병교부주식등을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주식을 포함)은 합병교부주식등에 합병등기일 전 2 년 이내에 취득한 합병포합주식수를 피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임.

[예규 5] 이전공공기관이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부동산업 및 건설업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하는 토지 및 건물의 양도에 따른 소득금액은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함

재조특-306, 2017. 3. 16.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 2 조제 2 호의 “이전공공기관”으로 부동산업과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 63 조의 2 제 1 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부동산업 및 건설업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하는 토지·건물의 양도에 따른 소득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 63 조의 2 제 2 항 제 2 호 가 목의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임.

[예규 6] 이익참가부사채를 소유한 거주자가 이익배당에 참가하여 지급받은 분배금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대상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법령소득-5970, 2017. 3. 14.

- 이익참가부사채를 소유한 거주자가 이익배당에 참가하여 지급받은 분배금은 「소득세법」 제 16 조의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해당 이자소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 113 조의 채권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대상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예규 7]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한 주식은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영업권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사전법령법인-533, 2017. 3. 9.

-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한 주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 72 조 제 2 항 제 3 의 2 호에 따라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물적분할한 순자산에는 물적분할한 사업부문에 대한 영업권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예규 8] 예약매출에 대해 진행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하던 법인이 K-IFRS 을 도입함에 따라 인도기준으로 회계처리를 변경한 경우 해당 손익은 그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인식할 수 있음

서면법령법인-5899, 2017. 2. 21.

- 예약매출에 대해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진행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하던 법인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도입함에 따라 인도기준으로 회계처리를 변경한 경우 해당 예약매출의 손익은 그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 직전 사업연도까지 진행기준으로 인식한 분양원가 및 분양수익을 이익

잉여금의 변동으로 조정한 경우 해당 이익잉여금 조정금액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도입한 사업연도에 각각 익금산입(기타) 및 손금산입(기타)하는 것임.

본 자료는 일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어떤 기업이나 개인의 특정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자료의 내용과 관련하여 의사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당 법인의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PMG 삼정회계법인

Tax Center of Excellence

kr-fmtaxtcoe@kr.kpmg.com

© 2017 Samjong KPMG.,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